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26

발의연월일: 2020. 8. 24.

발 의 자: 박재호·전재수·최인호

김정호・허 영・한병도

위성곤 · 정춘숙 · 이상헌

김수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항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외국에서는 운송용조종사 교육훈련용의 고성능 모의비행훈련장치부터 사업용·자가용 조종사 교육훈련용의 중·하위 성능의 비행절차훈련장치 등 다양한 종류의 모의비행장치가 개발되어 조종사 교육훈련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「항공안전법」에 규정된 상위 명칭인 '모의비행장치' 는 하위종류의 훈련장치를 용어상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용어로 수정하고 훈련의 목적에 따라 알맞은 훈련장치를 선택・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, 엄격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모의비행장치 지정 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모의비행장치의 용어를 수정하고 해당 장치의 종류를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며,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,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5호, 안 제39조의 제목 및 제1항·제2항, 안 제39조의 2 신설 등).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5호 중 "'모의비행장치""를 "'모의비행훈련장치""로, "모방한"을 "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한"으로, "기계·전기·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게 고안된"을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"으로 한다.

제3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·제2항 중 "모의비행장치"를 각각 "모의비행훈련장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과"를 "모의비행훈련장치의"로 한다.

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2(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) ①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9조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의비 행훈련장치에 대한 구비사항, 성능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(이하 "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기준"이라 한다)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정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려는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모의비행훈련장 치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등급 및 운용범위 등을 정하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④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지정 당시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모의비행장치"를 "모의비행훈련장치"로 한다.

제64조의 제목 중 "모의비행장치"를 "모의비행훈련장치"로 하고, 같은

조 중 "제39조제3항"을 "제39조의2제3항"으로, "모의비행장치"를 "모의비행훈련장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모의비행장치는 제39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간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모의비행장치의 탑승경력 또는 비행경험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또는 비행경험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4. (생 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15. <u>"모의비행장치"</u> 란 항공기의	15. <u>"모의비행훈련장치"</u>
조종실을 <u>모방한</u> 장치로서 <u>기</u>	<u>동일 또는 유사하게</u>
계·전기·전자장치 등에 대한	<u>모방한국</u>
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	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특성 등이 실제의 항공기와	<u>.</u>
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게 고	
<u>안된</u> 장치를 말한다.	
16. ~ 34. (생 략)	16. ~ 34. (현행과 같음)
제39조(<u>모의비행장치</u> 를 이용한	제39조(<u>모의비행훈련장치</u> 를 이용
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)	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	등) ①
대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	
는 <u>모의비행장치</u> 를 이용하여	<u>모의비행훈련장치</u>
제38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	
을 실시할 수 있다.	
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	②
<u>모의비행장치</u> 를 이용한 탑승경	모의비행훈련장치
력은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	
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.	
③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	③모의비행훈련

의 지정기준과 탑승경력의 인 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u> 장치의</u>	

제39조의2(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) ①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9조에 따른 모의비행 훈련장치 지정을 받으려는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 하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 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구비사항, 성능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(이하 "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"이라 한다)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

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모의비행 훈련장치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등급 및 운용범위 등을 정하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 만,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유 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.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 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
제55조(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하거나 계기비행·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(모의비행장치를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)이 있어야 한다.

1. • 2. (생략)

제64조(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)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항공 기로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 에 대해서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63 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다.

법으도 시성을 받은 경우		
2.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지정 당		
시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		
니하게 된 경우		
제55조(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) -		
모의비행훈련장치		
1.·2. (현행과 같음)		
제64조(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		
한 운항자격 심사 등)		
제39조의2제3항		
모의비행훈련장치		
<u>171011071</u>		
•		